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3-20
----------	---------

제출년월일 : 2003. 4.

제안자 :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기존의 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 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등 시설별, 기능별로 분류된 유사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외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문화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을 개방(안 제7조)
-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 상행위 및 광고물 설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10조)
-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의 양도금지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안 제17조, 제18조)
- 매표 및 검인규정을 정함(안 제19조)
-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운영요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현행조례 :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 나. 기 타 : 각 시, 군 사용료 대비표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문화체육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신체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3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아”라 함은 1세이상 6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1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13.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을 포함한 부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4.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15.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휴일예관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①문화체육시설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 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 학술발표회, 강연회 기타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

2. 법인, 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수련관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①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3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경. 조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 행사(단, 수련관 제외)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전염성질환자
3.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문화체육시설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6.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신청자가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조(시설의 개방) ①문화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4월 ~ 10월)	동 계 (11월 ~ 3월)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②수영장 개관은 평일 06:00~20:00, 토요일 06:00~16:00, 일요일 09:00~16:00로 하고 휴관일은 법정공휴일과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하며 시설 특성상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③청소년수련관시설은 매일 상오 10시부터 하오7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도 있다.

④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허가받은 자가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 보수
3. 시설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대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한 자

제10조(사용료) ①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 상행위 및 광고물설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더 징수한다. 다만, 매표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보다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②무료관람권(초대장 및 초대권 포함)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에 의한 사용자는 관람권 정산금을 사용 후 익일까지 시장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료만 징수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의 2할 가산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의 5할 가산

3. 사용자가 주. 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경로대상자, 불우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의 시설사용과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단체

6.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 무료공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3. 기타 문화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②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사용하지 않는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③전용사용자의 책임져야할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래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래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금액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으로 적립시킬 수 있다. 다만, 원래상태로 복구 후 잔여금액은 즉시 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과 입장권은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은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포함), 입장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검인대장을 비치하여 입장권 검인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 배치) ①시장은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 3급청소년지도사, 영양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 해촉)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제24조에 의거 문화체육시설 운영이 위탁되었을 때

제22조(문화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이용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김제시조례 제349호),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김제시조례 제401호), 김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김제시조례 제254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

1. 공설운동장(제12조 제1항 관련)

공설운동장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목적	요 금		비 고
		평 일	공휴일(토요일포함)	
육상경기장 (트랙)	체육경기	50,000	70,000	기준 : 1일1회8시간
	체육이외	100,000	140,000	
하 키 장 (축구장)	“	50,000	70,000	“
	“	100,000	140,000	

공설운동장 이용료

(단위 : 1인당/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평 일		공휴일(토요일포함)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하 키 장 (축구장)	1인 2시간	2,000	1,400	3,000	2,100	

【별표2】

2.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목적	요 금		비 고
		평 일	공휴일(토요일포함)	
체육관	체육경기	40,000	60,000	기준 : 1일1회8시간
	체육이외	150,000	225,000	

실내체육관 이용료

(단위 : 1인당/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평일		공휴일(토요일포함)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체육관	1인 2시간	1,000	700	1,500	1,000	

【별표3】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단위 : 원)

사용기준	평 일			토. 일. 공휴일			비 고
	영화	행사	공연	영화	행사	공연	
오전(09:00~12:00)	30,000	40,000	50,000	40,000	50,000	60,000	
오후(13:00~17:00)	30,000	40,000	50,000	40,000	50,000	60,000	
야간(17:00~22:00)	40,000	50,000	60,000	50,000	60,000	70,000	

수영장

(단위 : 원)

성 인					청소년(중. 고생)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500	50,000	135,000	255,000	480,000	2,000	40,000	108,000	204,000	384,000
어린이(초등생)					유아(유치원생)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500	30,000	81,000	153,000	288,000	1,000	20,000	54,000	102,000	192,000

생활관

(단위 : 원)

구 분	단 위	단 체 별	금 액	비 고
숙 박 비	1인1박	일 반	2,500	
		청 소 년	2,000	
식당사용료	1식	일 반	300	
		청 소 년	300	

기타시설

(단위 : 원)

사용기준	강 당	강 의 실	비 고
오전(09:00~12:00)	40,000	40,000	
오후(13:00~17:00)	40,000	40,000	
야간(17:00~22:00)	50,000	50,000	

【별표4】

4. 기타 사용료

부대시설

(단위 : 원)

구 분	살 수	음 향	조 명	냉(난)방				바 닥 보호매트
				체육관	수련관		바 닥 보호매트	
					극장.강당	생활관		
		냉방	난방					
사용료	1회	-기본 20,000	30,000	80,000	20,000	20,000	40,000	-1일(회)
	30,000	-마이크 5,000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30,000

구 분	전광판 (체육관)	식당사용료		탁 자	연 대	의 자	테이프 (CD)	전 기 사용료
		운동장	수련관					
사용료	-1일(회) 20,000	-1회 20,000	-1인 300	-개당 1,000	-개당 1,000	-개당 500	5,000	20,000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중 계	녹 화	중 계	녹 화
프로야구	30,000	20,000	15,000	10,000
아마추어경기	20,000	10,000	10,000	5,000
일반행사 및 공연	30,000	20,000	15,000	10,000

□ 상행위 및 광고물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주경기장	기 타	
에드벌룬 등 계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20,000	20,000	
선전물(게시, 부착광고물 10m×1m이내) (진열. 전람평방미터당)	년 간	1,000,000	500,000	
	5일 이내	100,000	60,000	
	1일 초과	20,000	2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1 부당 가격	판매액의 20퍼센트	판매액의 20퍼센트	

- ※ 1. 토. 공휴일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2.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3. 조기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액한 금액
 4.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5. 전용선수 이용시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
 6. 개인 및 단체로 100명 이상이 입장할 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조명비 감면

(별지 제1호서식)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행사명칭						
	행사내용						
	참석인원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일) : ~ :						
사 용 료	일금 (₩)원정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	시설명	수 량	금 액	시설명	수 량	금 액	
행사주요계획							

김제시문화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문화체육시설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허가사항	허가내용		변경신청내용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	주간			
	야간			
관람권 또는 기타				
허가조건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 합니다.				
김 제 시 장 직인				

(별지 3호서식)

문화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	주 소(단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용목적								
사 용 부대시설	마이크	조명	냉(난)방	의자	탁자	연대	살수	기타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 허가 조건 ◆

- 관계법령,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합니다.
-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별지 제4호서식)

검 인 대 장

연번	사 용 자			검 인 사 항				
	주 소	성 명	연락처	일 자	관람권	초대권	입장권	기 타

(별지5호서식)

납입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경상적 세입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귀하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경상적 세입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정수관 귀하		
납입자		
정수관	인	취급자 인
수입금출납원	인	기장 인

영수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경상적 세입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2003-20
------	---------

발의년월일 : 2003. 5. 10.

제안자 : 산업개발위원회

1. 수정이유

- 김제시문화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시설별, 기능별로 분류된 기존의 유사한 조례를 일원화하도록 규정된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 골자

-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군인”를 삭제하고, 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조)
- 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호의 허가순서 조정(안 제5조제1항)
-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 개방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조정(안 제7조)
-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다른 조항과 중복된 문안 삭제(안 제8조)

3. 따로 붙임

-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 2조제4호중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을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및 정기적으로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12호 및 제1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2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12. “체육경기”라 함은 체육관련협회 소속으로 시·군·구이상 규모의 체육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이외”라 함은 동호인을 비롯한 각 경기단체와 각 단체의 체육대회, 행사 등을 말한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중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체육활동이외의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행사 (단, 수련관 제외)”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행사 (단, 수련관 제외)”를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중 “문화체육시설(수영장 제외)”를 “문화체육시설(수영장, 문화의집 제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청소년수련관시설은”을 “청소년수련관시설 문화의집은”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항제2호중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을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로 한다.

안 별표3 제3호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중 “성인”을 “어른”으로 한다.

안 별표4 제4호 기타사용료 중계방송료중 프로야구를 삭제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3. (생략)</p> <p>4.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11.(생략)</p> <p>1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p> <p>13.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을 포함한 부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한다.</p> <p><신설></p> <p>14. (생략)</p> <p>15. (생략)</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생략)</p> <p>1.~3. (생략)</p> <p>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p> <p>5. (생략)</p> <p>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행사(단, 수련관 제외)</p> <p>②(생략)</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3. (제정안과 같음)</p> <p>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및 정기적으로 사용 -----</p> <p>-----</p> <p>5.~11.(제정안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12. “체육경기”라 함은 체육관련협회 소속으로 시·군·구이상 규모의 체육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이외”라 함은 동호인을 비롯한 각 경기단체와 각 단체의 체육대회, 행사 등을 말한다.</p> <p>13. (제정안 제14호와 같음)</p> <p>14. (제정안 제15호와 같음)</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제정안과 같음)</p> <p>1.~3. (제정안과 같음)</p> <p>4.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행사(단, 수련관 제외)</p> <p>5. (제정안과 같음)</p> <p>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p> <p>②(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시설의 개방) ①문화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하 계 (4월~10월)</th> <th>동 계 (11월~3월)</th> </tr> </thead> <tbody> <tr> <td>조 기</td> <td>05:00~08:00</td> <td>06:00~09:00</td> </tr> <tr> <td>주 간</td> <td>08:00~19:00</td> <td>09:00~18:00</td> </tr> <tr> <td>야 간</td> <td>19:00~23:00</td> <td>18:00~23:00</td> </tr> </tbody> </table> <p>②(생략) ③청소년수련관시설은 매일 상오 10시부터 하오 7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도 있다. ④(생략)</p> <p>제8조(개방제한)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생략) (생략) 			구 분	하 계 (4월~10월)	동 계 (11월~3월)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p>제7조(시설의 개방) ①문화체육시설(수영장, 문화의 집 제외) ----- ----- -----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하 계 (4월~10월)</th> <th>동 계 (11월~3월)</th> </tr> </thead> <tbody> <tr> <td>조 기</td> <td>05:00~08:00</td> <td>06:00~09:00</td> </tr> <tr> <td>주 간</td> <td>08:00~19:00</td> <td>09:00~18:00</td> </tr> <tr> <td>야 간</td> <td>19:00~23:00</td> <td>18:00~23:00</td> </tr> </tbody> </table> <p>②(제정안과 같음) ③청소년수련관시설 문화의 집은 ----- ----- -----</p> <p>④(제정안과 같음)</p> <p>제8조(개방제한) (제정안과 같음)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안 제2호와 같음) (제정안 제3호와 같음) 			구 분	하 계 (4월~10월)	동 계 (11월~3월)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구 분	하 계 (4월~10월)	동 계 (11월~3월)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구 분	하 계 (4월~10월)	동 계 (11월~3월)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생략)

- 1. (생략)
-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 3.~4. (생략)
- ②~③(생략)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제정안과 같음)

- 1. (제정안과 같음)
-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3.~4. (제정안과 같음)
- ②~③(제정안과 같음)

[별표3] 3. 청소년수련관

수 영 장

[별표3] 3. 청소년수련관

수 영 장

성 인					청소년(중·고생)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초등생)					유아(유치원생)				
--	--	--	--	--	--	--	--	--	--
--	--	--	--	--	--	--	--	--	--

어 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4] 4. 기타 사용료

중계방송료

[별표4] 4. 기타 사용료

중계방송료

구 분	텔레비전		라 디 오	
	중계	녹화	중계	녹화
프로야구	30,000	20,000	15,000	10,000
아마추어경기	20,000	10,000	10,000	5,000
일반행사및공연	30,000	20,000	15,000	10,000

구 분	텔레비전		라 디 오	
	중계	녹화	중계	녹화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
-----	--	--	--	--